

이 사 회 회 의 록

- 회의일시 : 2017년 07월 24일 (월) 오후 7시 00분
- 소집통보 : 2017년 07월 15일 (토)
- 회의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0(탄방동), 비씨씨 킹덤뷔페
- 참석자 : 총 재적이사 11명 중 7명 참석
이사) 김*미, 김*중, 최*석, 임*운, 고*봉, 오*수, 심*균
- 불참자 : 장*정, 고*신, 이*식, 장*정
- 의 제 : 1.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및 산하시설 2017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심의
2. 사회복지법인 포도원의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 의결사항 : 1.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및 산하시설 2017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결의
2. 사회복지법인 포도원의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채택

○ 회의진행 :

* 2017년 07월 24일(월요일) 오후7시 00분에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0(탄방동) 비씨씨 킹덤뷔페 모임장에서 이사회를 개최, 법인사무국 종사자 김*정을 이사회 서기로 임명하다. 김*중 이사가 11인의 이사 중 7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의장 김*미 대표이사가 정관 제28조에 의거 회의를 선언하다.

의 장 :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이사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은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및 산하시설 2017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심의입니다.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전자우편을 통해 법인 및 산하시설의 예산 내역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서를 보면서 법인 및 산하시설 실무자분들의 부연 설명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인의 2017년 2차 추경 예산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 정 : 법인의 2017년도 2차 추경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수익사업으로 임대사업 운영을 계획함에 따라 임대료 수입과 임대보증금이 발생하고, 관련부대비용의 지출을 위한 차입금이 발생하여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대료 수입 1천만원, 지정후원금 3천5백5십5만8천원, 비지정후원금 3천4십5만6천원, 기타차입금 1억원, 전년도이월금 6억8천1백6십5만9천1백9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2천1백5만7천8백4원, 기타예금이자수입 5십2만1천8십7원, 기타잡수입 5백8십8만원으로 총 8억8천5백1십3만2천원입니다. 세출은 급여 3천6백1십9만8천원, 제수당 3백6십만8천4백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 3백3십1만7천2백8십원, 사회보험부담금 3백7십4만9천5백2십원, 기관운영비 1백만원, 회의비 1백6십만원, 여비 6십만원, 수송비 및 수수료 2천2백3만3천2백원, 공공요금 6백8십8만원, 제세공과금 3천6백5십만원, 기타운영비 1백만원, 시설비 1백만원, 자산취득비 6억8천1백5십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백3십9만원, 기타사업비 1백만원, 시설전출금(후원금)-로템나무 2백만원, 시설전출금(후원금)-포도나무 1백만원, 시설전출금(후원금)-로템 1천만원, 원금상환금 6천9백만원, 잡지출 1백7십4만5천6백원으로 총 8억8천5백1십3만2천원입니다. 2017년 2차 추경예산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2017년 급여 레이블 반영에 따른 인건비의 소폭 상승과 수익사업 운영관련 취득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발생에 따른 수송비 및 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의 증가, 그리고 추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기에 원금 상환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 * 윤 : 법인의 2017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최 * 석 : 임*윤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법인의 2017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로템나무주간보호센터 2017년 2차 추경예산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박 * 숙 : 로템나무주간보호센터 2017년 2차 추경예산 세입은 이용료사업수입 2천5백4십만원, 시도보조금-운영비 7백4십만2천원, 시도보조금-인건비 1억3천7백6십7만3천원, 기타보조금-시비 2백4십만원, 기타보조금-구비 2백4십만원, 지정후원금 5십만원, 비지정후원금 1천4십3만원, 법인전입금(후원금) 2백만원, 전년도이월금(이용료) 1천1백9십6만5백3십7원, 전년도이월금(잡수입) 4백5십9만9천2백1십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1천4백9십6만4천7백1십1원, 기타예금이자수입 1만8천5백4십2원, 기타잡수입 2백4십만원으로 총 2억2천2백1십4만8천원입니다. 세입에서 주목할 점은 이용자의 변동에 따른 이용료사업수입의 증가와 2017년 급여레이블 반영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출은 급여 1억1천5백5만1천7백5십원, 제수당 2천9백7십3만1천4백5십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천1백2십6만4천9백9십원, 사회보험부담금 1천2백3십만1천1백3십원, 기타후생경비 1백6십1만원, 기관운영비 1백1십만원, 회의비 9십6만원, 여비 1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3백8십4만4천8백9십9원, 공공요금 2백9십1만원, 제세공과금 2백7만원, 차량비 1백5만원, 기타운영비 3백2십4만2천원, 시설비 1백4십4만1천7백6십1원, 자산취득비 6백1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백5십만원, 연료비 2백6십3만5천4백3십9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7백7십5만2천원, 교육재활사업비 2백2십5만원, 기타사업비 8십3만2천5백8십1원, 식간식사업비 7백5십만원으로 총 2억2천2백1십4만8천원입니다.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조리원의 입퇴사에 따른 급여의 감소 부분과 2017년 급여 레이블 반영에 따른 인건비 소폭 상승 부분이 상계되어 인건비 부분에 변동이 발생한 것과 도배와 장판의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고 * 봉 : 로템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7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심 * 균 : 고*봉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로댐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7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 2017년 2차 추경 예산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박 * 숙 :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7년 2차 추경 예산 세입은 이용료사업수입 1천4백8십8만원, 시도보조금(운영비) 7백4십8만6천원, 시도보조금(인건비) 1억4천9백5십4만2천원, 기타보조금(종사자수당-시비) 2백4십만원, 기타보조금(종사자수당-구비) 2백4십만원, 지정후원금 1백2십만원, 비지정후원금 9십만원, 법인전입금(후원금) 1백만원, 전년도이월금(잡수입) 1십9만7천9백2원, 전년도이월금(이용료) 2천1백8만2천8백2십7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8백6십7만4천7백5십1원, 기타예금이자수입 1만7천5백2십원, 기타잡수입 1백9십2만원으로 총 2억1천1백7십만1천원입니다. 세입에서 주목할 점은 2017년 급여 테이블 반영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출은 급여 1억6백5십2만3천3백4십원, 제수당 2천6백7십3만5천9백8십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천5십4만9천9백1십원, 사회보험부담금 1천1백1십8만7천8백3십원, 기타후생경비 1백2십6만원, 기관운영비 1백만원, 직책보조비 1백2십만원, 회의비 1백2십4만4천원, 여비 1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2백3십8만7천원, 공공요금 3백2십5만5천원, 제세공과금 6십8만원, 기타운영비 3백1십8만원, 시설비 1백4십5만원, 자산취득비 8백7십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백1십만5천원, 연료비 1백7십7만6천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7백8십9만6천3백3십원, 교육재활사업비 2백9십만원, 기타사업비 4십6만원, 식간식사업비 8백1십4만8천원, 잡지출 1만2천6백1십원, 예비비 1백만원으로 총 2억1천1백7십만1천원입니다. 세출에서는 직원의 입퇴사에 따른 호봉의 변동부분과 2017년 급여 테이블 반영에 따른 인건비 소폭 상승이 상계되어 인건비 부분에 변동이 발생한 것과 시설비를 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를 늘린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 * 수 :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7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임 * 윤 : 오*수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의 2017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로템 2017년 2차 추경 예산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맹 * 정 : 로템 2017년 2차 추경 예산 세입은 입소비용수입 8천3백3십2만원, 국고보조금 8억8천8백5십4만6백9십원, 시도보조금 4억2천6백2십6만3천4백5십원, 시군구보조금 2천8백2십8만7천3백1십원, 지정후원금 2천2백7십7만원, 비지정후원금 2천5백2십만원, 법인전입금(후원금) 1천만원, 전년도이월금 9천3백2십2만8천9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2천7백3만8백8십6원, 기타예금이자수입 1십9만8천7백4원, 기타잡수입 1천6백1십6만9백5십1원으로 총 1십6억2천1백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주목할 점은 기능보강사업관련 보조금을 국비와 시비로 나누어 산입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의 증감이 발생한 것과 보조금 이자액이 발생하여 기타예금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은 급여 6억9천8백8십1만5천3백6십원, 제수당 2억8천2백3십6만1천5백7십원, 일용잡금 2천4백5십2만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8천2백5십5만4천9백4십원, 사회보험부담금 8천7백5십8만5천4백3십원, 기타후생경비 4백8십3만2천9백8십원, 기관운영비 1십만원, 회의비 1십만원, 여비 2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2백2십2만6천7백8십7원, 공공요금 2천2백4십4만9천6백원, 제세공과금 5백5십4만2천8십원, 차량비 3백7십만원, 기타운영비 1천8백1십4만4천2백6십5원, 시설비 9천1백4십6만원, 자산취득비 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3백7십2만8천원, 생계비 3천8백3십9만원, 수용기관경비 1천5십6만5천원, 피복비 6백4십3만7천5백원, 의료비 8백5십3만원, 장의비 3백만원, 특별급식비 1

천5백4십3만7천4백4십원, 연료비 1천3백4십4만5천원, 수학여행비 2십만원, 기타 교육비 6십9만1천4백8십원, 의료재활사업비 2백5십만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1천2백9십5만2천4백8십3원, 교육재활사업비 4백7십만원, 기타사업비 2천2백2십7만원, 잡지출 1억2천6백6십6만9천1백3십4원, 반환금 9만9백5십1원으로 총 1십6억2천1백만원입니다. 세출에서 주목할 점은 영양사의 출산휴가와 계약직 자부담 교사를 포함하여 직원 2명의 변동이 발생하여 인건비 항목이 대체로 감소된 것과 수급생계급여로만 입소비 사용이 제한되었던 것이 일부 플리면서 기준에 부합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심 * 균 : 로템의 2017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각 항목별로 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에 동의합니다.

김 * 중 : 심*균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제출된 로템의 2017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으로 사회복지법인 포도원의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관하여 김*중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 * 중 : 우리 법인은 여러 차례 기본재산취득과 관련하여 논의를 해왔습니다. 주된 논점은 재정이었습니다.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재산 재정비는 취득 후 관련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임대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재산 재정비는 취득 과정에서의 관련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법인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본재산 취득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까지 기본재산을 재정비해야 출연재산 매각에 따른 사용기준금액 미달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선택의

폭을 좁힐 필요성이 있어 이렇게 안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임 * 윤 :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재산 재정비와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재산 재정비에 대해 잠시만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 중 : 우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재산 재정비는 비영리를 추구하기에 취득시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등기관련부대비용을 제외하고는 각종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금의 건물에 3억 7천만원이상의 리모델링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듯이, 추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생각하지도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재산 재정비는 영리를 추구하기에 취득시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등기관련부대비용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1백만원가량의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지출이 없고, 임대료 수익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 * 수 : 초기 비용만을 고려해보았을 때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취득이 더 낫겠지만, 추후 비용을 고려해보았을 때는 수익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전 임대사업 경험에 비추어볼 때, 임대료 수익을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니, 법인의 재정 상태가 향상될 것입니다. 매년 법인의 전년도이월금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세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도 수익사업을 통해 목적사업을 위한 자금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법인도 그 일환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 * 봉 :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는 취득에 따른 비용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과 지금 법인의 재정상태를 고려해보았을 때,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 * 중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장기차입금이 기본재산총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않으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

습니다. 이에 초기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4천만원을 장기차입하고자 합니다.

심 * 균 : 장기차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김 * 중 : 여러 이사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대표이사님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대표이사님이 무이자로 4천만원을 빌려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기차입금은 임대료 수익으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임 * 윤 : 중여지책으로 대표이사님으로부터의 장기차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오*수 이사님이 언급하였듯이 임대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법인의 상황에서 더 좋은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이러한 기본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이사회에서 정보수집에서 이사회 의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수일이 소요되기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님이 기본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심 * 균 : 임*윤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 * 봉 : 심*균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 동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다.

의 장 : 이로써 사회복지법인 포도원의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채택하

였습니다. 안내해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른 의결할 사항이
나 의견이 있으십니까?(전원 “없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2017년 07월 24일 이
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08시 30분이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2017년 07월 24일

대표이사 김 * 미 (인)

이 사 김 * 중 (인)

이 사 최 * 석 (인)

이 사 임 * 운 (인)

이 사 고 * 봉 (인)

이 사 오 * 수 (인)

이 사 심 * 균 (인)